

수계치수사업 II 단계 추진

정 해 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토목사무관)

1. 서 론

최근 수년간(1996, 1998, 1999년) 수해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데 대해 항구적이고도 종합적인 수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99년 하반기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수해방지종합대책백서(수해방지대책기획단, 1999. 12)를 발간하였다.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세부실천계획에서 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역별 종합치수계획수립,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정비 및 하천종합정비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다. 이 중에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과 주요 유입지천을 국가가 일괄하여 정비하는 수계치수사업을 13대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임진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삼교천, 만경강, 형산강, 동진강, 태화강, 탐진강)로 확대하여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후형태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의 제방보강 및 유입지천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계치수사업 II 단계를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수계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계치수사업 II 단계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계치수사업의 필요성을 수해피해 현황과 하천개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수계치수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본계획 현황을 소개하고 끝으로 장래 하천개수사업의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예방 사업으로서의 수계치수사업의 역할을 확인코져 한다.

2. 수계치수사업의 필요성

2.1 수해피해 현황분석

〈표 1〉의 연도별 피해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피해액 및 공공시설 피해액은 1987년 이후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96년 호우, 1998년 호우, 1999년 호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 현상으로 재해피해 잠재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액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망, 실종 등의 인명피해, 이재민, 침수면적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예방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수계치수사업 등의 하천개수 사업 실시로 하천제방 개수율이 높아지고,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한 내수배제처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재해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로 판단된다.

2.2 하천개수현황

홍수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홍수를 예방하고 피

표 1. 연도별 피해현황

연도	사망,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ha)	건물 (백만원)	선박 (백만원)	농경지 (백만원)	농작물 (백만원)	공공시설 (백만원)	기타 (백만원)	총피해액 (백만원)
1958	161	-	210,381	40,093	-	760,304	15,658	168,328	3,464	982,757
1959	781	-	236,808	45,555	-	129,055	67,563	54,163	13,280	309,616
1960	81	-	86,568	42,183	-	506,945	105,698	76,506	18,073	749,404
1961	252	-	74,375	36,043	-	262,738	109,917	92,977	4,281	505,956
1962	327	-	252,268	3,124	-	308	1,576	7,106	16,136	1,066
1963	296	-	170,336	5,088	-	40,689	27,200	21,930	8,695	4,712
1964	672	-	3,884	3,180	-	20,427	14,161	13,329	4,289	3,393
1965	328	290,058	119,977	13,973	161	42,407	44,415	50,344	10,472	161,772
1966	157	163,687	53,566	4,256	838	18,507	26,615	26,763	1,699	78,678
1967	29	3,478	1,693	338	42	1,526	991	3,200	100	6,197
1968	174	66,098	52,425	4,338	4,963	8,404	20,131	23,028	3,489	5,431
1969	699	341,875	155,111	24,300	1,535	37,048	133,877	112,264	18,940	327,964
1970	267	228,788	144,448	9,756	4,513	14,214	94,831	72,583	11,499	20,394
1971	357	115,881	71,861	5,228	3,913	9,267	38,038	39,906	6,651	103,002
1972	852	656,361	16,237	37,255	2,052	22,942	96,302	102,419	19,212	34,109
1973	103	9,139	24,428	1,114	894	1,948	17,396	17,017	3,845	5,495
1974	178	34,399	113,667	2,141	710	4,460	83,227	30,334	4,784	23,243
1975	91	4,098	86,312	1,128	230	2,336	24,670	9,206	313	37,882
1976	529	9,901	28,342	1,910	4,677	5,266	14,970	21,565	5,406	53,791
1977	345	73,484	15,353	7,980	324	8,027	9,646	41,983	130,620	198,580
1978	158	21,819	62,276	3,246	3,008	5,391	37,699	38,478	4,231	92,053
1979	423	30,331	125,740	11,614	18,885	29,763	142,092	160,186	55,244	417,784
1980	279	53,860	115,762	13,563	8,679	54,137	101,409	172,853	25,256	375,897
1981	216	18,306	149,583	5,097	3,378	17,019	25,759	125,503	14,865	191,621
1982	121	6,609	37,707	1,203	1,502	6,605	40,770	60,395	12,012	122,487
1983	91	1,355	24,851	3,096	1,518	136	14,873	6,372	3,039	29,034
1984	265	364,236	140,199	13,164	963	27,342	93,243	179,368	51,847	365,928
1985	250	72,257	126,292	1,766	7,812	2,329	105,122	64,980	19,806	201,814
1986	156	99,114	86,701	2,880	3,567	2,458	258,536	58,553	26,367	352,362
1987	1,022	272,277	300,453	20,510	28,818	100,874	337,287	806,105	286,553	1,580,147
1988	143	5,053	17,987	859	2,162	15,365	19,730	120,362	18,848	177,326
1989	307	92,593	121,060	8,478	7,608	20,966	330,217	292,749	128,598	788,616
1990	257	203,314	124,276	12,688	4,175	61,840	201,840	380,182	233,245	893,969
1991	240	29,573	61,173	6,499	2,876	50,379	-	390,717	57,590	508,061
1992	40	965	13,968	125	1,398	1,788	-	19,341	8,289	30,940
1993	69	13,779	58,488	1,484	13,447	12,750	-	194,312	27,684	249,678
1994	72	11,852	6,275	687	5,404	13,494	-	106,940	62,664	189,189
1995	158	30,408	79,254	5,841	8,198	71,898	-	511,606	110,613	708,157
1996	77	18,686	47,968	17,086	976	61,738	-	381,837	89,752	551,389
1997	38	6,296	45,773	2,065	3,069	12,208	-	160,780	31,671	209,792
1998	384	30,308	91,629	37,816	1,289	103,103	-	1,201,860	205,850	1,549,918
1999	89	26,656	75,948	40,559	2,218	24,195	-	945,421	207,281	1,219,674
평균	275	81,117	91,224	11,888	4,451	45,436	80,468	175,330	46,823	343,316
최근 10 개년평균	142	37,184	60,475	12,485	4,305	41,339	201,840	429,299	103,464	611,077

■ 일반기사

수계치수사업 II 단계 추진

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방이나 유수지와 같은 각종 수리시설물을 건설하는 구조적인 대책과 범람원 관리, 홍수보험, 홍수에·경보와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다. 이들 중 제방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하천개수사업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상습적인 홍수피해의 발생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규모와 빈도 면에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일반하천개수사업의 투자현황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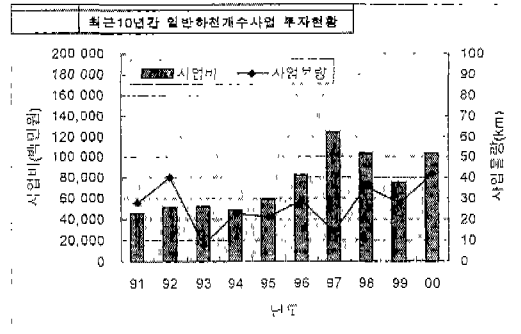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10년간 일반하천개수사업 투자현황

표 2. 수계별·등급별 개수현황('99년말 실적 1/2)

단위 : km

구분	하천수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개수율(%)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연장	
계	3,896	30,217.32	36,252.50	25,489.1	70.3	22,022.8	3,466.3	10,763.4	
국가	62	2,795.01	2,913.63	2,742.4	94.1	2,351.7	390.7	171.3	
지방 1	55	1,333.60	1,213.51	1,031.9	85.0	1,000.5	31.4	181.6	
지방 2	3,779	26,088.71	32,125.36	21,714.9	67.6	18,670.7	3,044.3	10,410.4	
한강	소계	710	7,159.15	6,934.38	5,069.5	73.1	4,983.5	86.0	1,864.9
	국가	15	778.58	548.43	516.2	94.1	491.1	25.1	32.2
	지방 1	12	566.67	268.31	228.8	85.3	227.6	1.2	39.5
	지방 2	683	5,813.90	6,117.64	4,324.5	70.7	4,264.7	59.8	1,793.2
낙동강	소계	819	7,484.10	8,363.65	5,465.0	66.4	4,097.4	1,367.6	2,761.0
	국가	10	824.16	837.62	764.7	91.3	530.2	234.5	73.0
	지방 1	10	191.00	212.80	171.1	80.4	166.5	4.6	41.7
	지방 2	799	6,468.94	7,313.23	4,529.3	63.1	3,400.8	1,128.5	2,646.3
금강	소계	492	3,760.21	4,959.78	3,727.9	75.2	3,289.9	438.1	1,231.8
	국가	11	389.41	349.53	312.9	89.5	300.6	12.3	36.7
	지방 1	20	358.73	394.50	337.9	85.7	326.3	11.6	56.6
	지방 2	461	3,012.07	4,215.75	3,077.1	73	2,662.9	414.2	1,138.6
영산강	소계	170	1,436.06	2,081.95	1,438.3	62.6	1,303.3	135.1	643.6
	국가	5	191.33	305.23	301.5	67.2	205.1	96.4	3.8
	지방 1	2	46.20	82.00	72.4	88.3	72.4	-	9.6
	지방 2	163	1,198.53	1,694.72	1,064.5	60.5	1,025.8	38.6	630.3
섬진강	소계	284	2,073.85	2,386.41	1,352.6	56.7	1,076.3	276.3	1,033.8
	국가	3	237.30	164.03	161.8	98.6	150.7	11.1	2.2
	지방 1	1	22.00	27.50	17.7	64.4	17.7	-	9.8
	지방 2	280	1,814.55	2,194.88	1,173.1	53.4	907.9	265.2	1,021.8
안성천	소계	103	606.37	1,097.94	999.1	91.0	992.7	6.4	98.9
	국가	4	87.60	179.59	177.0	98.5	170.8	6.2	2.6
	지방 1	-	-	-	-	-	-	-	-
	지방 2	99	518.77	918.35	822.1	89.5	821.9	0.2	96.3

표 2. 수계별·등급별 개수현황('99년말 실적2/2)

단위 : km

구 분	하천수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개수율(%)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연장	
삼교천	소 계	100	606.04	973.89	782.4	80.3	713.7	68.7	191.5
	국 가	3	63.73	119.19	101.2	84.9	101.2		18.0
	지방 1	2	29.30	54.90	45.8	83.4	45.8		9.1
	지방 2	95	513.01	799.80	635.4	79.4	566.7	68.7	164.4
만경강	소 계	83	599.96	905.60	688.4	76.0	422.8	265.6	217.2
	국 가	3	67.80	145.90	145.9	100.0	145.5	0.4	
	지방 1	2	26.00	31.20	27.8	89.1	13.8	14.0	3.4
	지방 2	78	506.16	728.50	514.7	70.7	263.5	251.2	213.8
동진강	소 계	88	456.17	694.30	553.5	79.7	424.2	129.3	140.8
	국 가	4	69.80	142.40	142.4	100.0	141.0	1.4	
	지방 1	1	19.80	35.00	35.0	100.0	35.0		
	지방 2	83	366.57	516.90	376.1	72.8	248.2	127.9	140.8
형산강	소 계	30	281.75	353.51	301.6	85.3	298.8	2.8	51.9
	국 가	1	36.00	62.05	61.8	99.6	59.9	1.9	0.3
	지방 1	-	-	-	-	-	-	-	-
	지방 2	29	45.75	291.46	239.8	82.3	238.9	0.9	51.7
탐진강	소 계	37	233.08	337.70	262.8	77.8	228.3	34.6	74.9
	국 가	1	27.32	43.60	43.6	100.0	42.2	1.4	
	지방 1	-	-	-	-	-			-
	지방 2	36	205.76	294.10	219.2	74.5	186.1	33.1	74.9
태화강	소 계	61	326.42	521.39	267.3	51.3	267.3		254.1
	국 가	1	11.60	14.98	13.5	90.0	13.5		1.5
	지방 1	1	13.90	27.00	26.5	98.1	26.5		0.5
	지방 2	59	300.92	479.41	227.3	47.4	227.3		252.1
기 타	소 계	919	5,194.16	6,641.99	4,580.7	67.6	3,924.8	655.8	2,199.0
	국 가	1	10.38	1.08	-	-			1.1
	지방 1	4	60.00	80.30	68.6	85.8	68.9		11.4
	지방 2	914	5,123.78	6,560.61	4,511.8	67.4	3,856.0	655.8	2,186.5

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사업비와 사업물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95년의 사업비가 59,497백만원, 물량이 21km였다가 '96년의 사업비가 83,230백만원, 물량이 29km로 늘어나고 '00년의 사업비는 104,000백만원, 물량이 42km로 나타나 '96년부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96년 이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따른 하천의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의 유하능력을 초과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개수사업비와 물량을 크게 증가시

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99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법정하천은 약 30,217km이다, 이 중 국가하천이 약 9.3%인 2,795km, 지방1급하천이 약 4.4%인 1,333km이고, 나머지 86.3%인 26,089km가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약 70.3%인 22,023km가 개수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2급하천은 요개수연장 32,125km중 67.6%인 21,715km의 저조한 개수로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계별, 하천등급별 개수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하

천과 지방1급하천의 개수율은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지방2급하천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하천개수 사업비를 전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고, 도로 개설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이 빈약하여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수계치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3. 수계치수사업 및 기본계획의 추진

3.1 수계치수사업의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하천개수형태는 지구별 개수였다. 하천정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개수방식은 기존 하천관리조직이 행정조직을 기초로 한 구조인데 기인한 바 크다. 즉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1급 및 2급 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천투자예산의 배분주체에 따라 사업의 시행 시기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구단위 하천개수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단일하천 내에서도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하천등급이 분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사업의 투자시기는 물론 투자 주체마저도 달라진다. 그 결과 특정 구간에 하천개수가 이루어져도 인접한 구간의 하천개수는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하천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하천의 본류 구간은 개수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지류구간은 하천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수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치수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도 낳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하천본류구간의 중요도에 따라 수계전체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고, 그 내부의 주요 하천은 모두 동급의 하천으로 지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일본의 사례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

리 나라도 이와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89년부터는 수계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년간 수계치수사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사업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99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물량 역시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98년의 사업비는 173,008백만원, 물량이 86km이고 '99년은 사업비가 411,376백만원, 물량이 178km로 사업비와 물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하고 계획규모 또한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하천수계의 종합적인 홍수저감 대책이 요구됨으로써 수계치수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계치수사업은 사업비와 물량면에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계치수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수계치수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5대 수계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하천 본류구간과 지류 중에서 본류 배수위 영향구간을 설정하여 개수사업을 전액 국고투자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계치수사업은 이후 '98년부터 임진강, 삼교천, 안성천을 포함하는 8대 수계치수사업으로, '99년부터는 다시 만경강, 동진강, 형산강, 그리고 태화강, 탐진강을 포괄하는 13대 하천 수계치수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기존 수계치수사업은 수계 본류의 배수위 영향구간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지구 선정에 많은 제한을 두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특히 90년대 이후 발생하는 이상강우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 제외된 구간에서 홍수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치수사업은 홍수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치수사업의 설계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수계치수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계치수사업 I 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계속하여 수계치수 II 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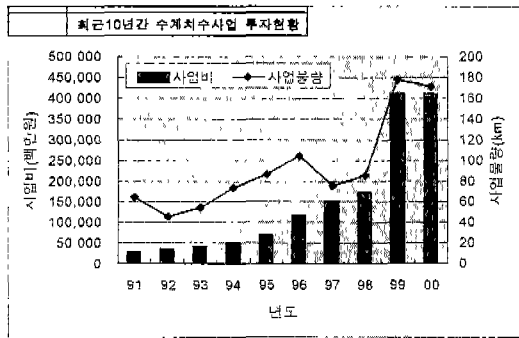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10년간 수계치수사업 투자현황

하여야 한다.

3.2 수계치수사업 II 단계 기본계획

수계치수 II 단계 기본계획은 유역개발로 인한 홍수 피해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수범람방지, 홍수조절기능 향상, 내수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수해의 경감과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계치수 II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수계치수 II 단계 기본계획의 권역별 범위는 <표 3>과 같으며, 수계치수기본계획 수립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사업대상범위는 권역별 수계내 지방2급 이상 하천의 요개수 지구이며,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으로는 본류 및 배수영향을 받는 주요 지류하천 구간으로서 ① 주거밀집지를 관류하는 하천구간, ② 지방자치단체 개수요청구간, ③ 기본계획 수립하천구간중 보축 및 호안보강 구간, ④ 시설물 개·보수 및 내수배제 불량지역, ⑤ 지역주민의 건의지구 등이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사업대상지구의 종합적인 시설계획, 사업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수계별, 지역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업시행 방향은 수계를 소규모 치수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본류를 지류보다 우선하여 시행하고 하류에서 상류지역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사업시행은 비용-편익율에 따른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지구별 사업시행은 비용-편익율, 사업시행순위, 해당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배수펌프장은 하천개수

표 3. 수계치수 II 단계 기본계획 수립 범위 (km)

권역	수계명	계	기본계획 기수립	기본계획 미수립	비 고
I 권역	한 강	542	219	323	
	안 성 천	25	22	3	
	강릉남대천	6	1	5	
	양양남대천	12	3	9	
	삼척오십천	11	9	2	
	소 계	596	254	342	
II 권역	낙 동 강	623	286	337	
	영덕오십천	22	19	3	
	소 계	645	305	340	
III 권역	금 강	213	157	56	
	삼 교 천	17	6	11	
	섬 진 강	296	145	151	
	영 산 강	124	121	3	
	소 계	650	429	221	
총 계		1,891	988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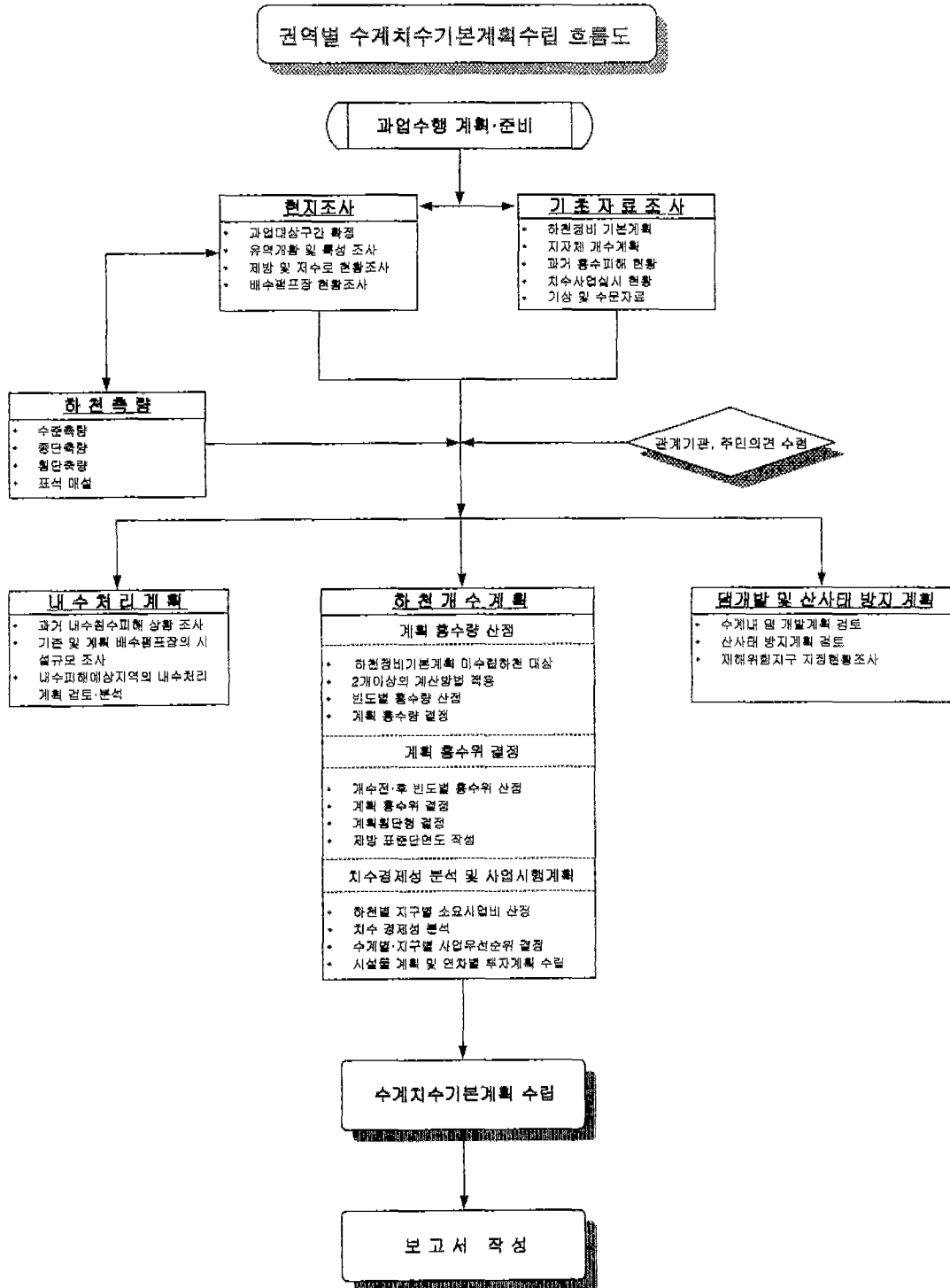


그림 3. 권역별 수계치수기본계획 수립 흐름도

표 4. 등급별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하천현황)

구분	개소	연장(km)	대상하천	관리청	비고
계	3,896	30,217			
국가하천	62	2,795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하천법 시행령에서 지정	건교부장관	
지방1급하천	55	1,333	지방이해와 밀접한 하천 하천법 시행령에서 지정	시·도지사	
지방2급하천	3,779	26,089	국가 및 지방1급하천에 유입되는 하천, 시·도지사가 지정	시·도지사	

표 5. 등급별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하천개수현황)

단위 : km

구분	뿔개수 연장	'99까지		2000계획		2001계획		장래(2002~2007)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합계	36,253	25,489	70.3	26,869	74.1	27,915 (1,046)	77.0	8,338	100
국가	2,914	2,742	94.1	2,772	95.1	2,797(25)	96.0	117	100
지방1급	1,214	1,032	85.0	1,082	89.1	1,117(35)	92.0	97	100
지방2급	32,125	21,715	67.6	23,015	71.6	24,001 (986)	75.0	8,124	100

사업과 병행 또는 별도로 시행한다.

4. 장래 하천개수사업 추진계획

○ 최근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빈발하는 강우와 그로 인해 홍수피해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개수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영월댐 백지화 등 댐에서의 홍수조절 여건은 갈수록 불리하므로 하천개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홍수피해의 사전예방이 가능함.

○ 사회적으로는, '99년 임진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하천개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종래에는 천재 즉, 자연재해로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방대책의 부재에서 오는 인재 및 관재로 인식하여 정부에 대한 부정

적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가신뢰도 측면에서도 하천개수는 시급히 완료하여야 함.

○ 또한,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하고 계획규모를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계를 일관하는 종합적인 홍수저감 대책이 요구됨으로써 수계치수사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수계치수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0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개수율은 74% 이며, '01년까지 77%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02년도까지는 80%까지 개수를 완료하고(표 5 등급별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 목표년도인 '07년까지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하천개수 완료시까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목표연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